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선박 명세

사업기간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